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제11판(2022.2.10.)
- 나.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(보험급여과-603호, 2022.1.29.)

2.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및 그간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와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사항

- (확진용, 응급용 선별, 독감동시) 사례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
- (확진용) 기존 급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(예정)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
- (신속항원)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

○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 관련 변경사항

-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(입소자) 방역강화 조치 관련
 -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입원환자 대상 주 1회 검사를 확진검사(취합)에 한하여 적용
 - 입원(소) 3일차 추가 검사를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
-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·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

○ 시행일 : 2022.2.14.(월)

* 단, 보호자·간병인 등의 PCR 검사는 제도 안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(2.14.~2.20.) 운영

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.
2.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2. 2. 11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839 (2022. 2. 1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